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영업표지	
제공확인	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식회사 버핏서울 대표이사 장 민 우 (인)

가맹희망자 : _____ 서명 또는 (인)

TEAMBUTFIT

2024. . .

www.teambutfit.com

TEAMBUTFIT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버핏서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식회사 버핏서울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로 336, 3층(역삼동, 건일빌딩)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02-877-3624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없음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501-3624

<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6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0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4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5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30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48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50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52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54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버핏서울	팀버핏, TEAMBUTFIT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36 3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 11. 6.	2018. 12. 5.	장민우	02-877-3624	없음
	법인등록번호	110111-6917178	사업자등록번호	548-81-0143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개시일에 당사는 귀하에게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이 라이선스는 해당 지역 내에서 귀하가 독점적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라이선스입니다. 귀하는 지역 내에 위치한 점포에서만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팀버핏/TEAMBUTFIT	팀버핏은 그룹 운동 프로그램으로, 50-90분 동안 약 16-30인이 동시에 한 공간에 모여 단체로 웨이트 트레이닝, 씨킷 트레이닝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코칭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 호	팀버핏 OO	웨이트/부스터/리커버리로 구성된 고강도 인터벌 그룹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상표(서비스표)	팀버핏, TEAMBUTFIT, TEAMBUTFIT	당사는 (주) 버핏서울이라는 법인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지만, 대중적으로는 “팀버핏”과 “TEAMBUTFIT”이라는 상표 및 상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광 고	팀버핏, TEAMBUTFIT	당사는 TV, 라디오, 잡지, 신문, 이메일, 인터넷, 야외 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팀버핏이라는 상표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단위:천 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848,241	1,340,578	1,507,663	2,337,611	-1,698,066	-1,449,685
2022년	4,966,352	2,496,557	2,469,796	6,446,488	-1,509,958	-1,537,865
2023년	7,809,907	5,210,248	2,599,659	12,625,869	-1,993,422	-1,870,924

그 근거자료는 별첨 1(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5. 1) 항의 매출액은 당사의 [팀버핏] 등 직영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만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점이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가맹점 관련 매출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장민우	대표이사	2017. 2. 22. ~ 현재	(주)버핏서울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공진규	이사	2017. 2. 22. ~ 현재	(주)버핏서울 이사 겸 COO	회사 일상 업무
	박한희	이사	2017. 2. 22. ~ 현재	(주)버핏서울 이사 겸 브랜딩팀 리드	회사 일상 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9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팀버핏]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TEAMBUTFIT	상표권	2023.02.09. 출원 2024.08.06. 등록	40-2231191 40-2231184 40-2231178 40-2231177 40-2231187	주식회사 버핏서울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시작 예정(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2. 9. 15.)

당사는 현재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없습니다.

2. 팀버핏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버핏서울	버핏서울	장민우	해당없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본관동 321호(신림동,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주)버핏서울	팀버핏	장민우	가맹사업 시작 예정	서울 강남구 논현로 336 3층

당사는 2017. 2. 22. ‘버핏서울’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대표자 장민우)로 시작하여 ‘버핏서울’이라는 영업표지로 그룹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는 현재 가맹사업예정인 [팀버핏]의 전신이 되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 후 2018. 11. 6. (주)버핏서울이 설립되었으며 2022. 9. 15.부터 [팀버핏] 직영 1호점을 시작으로 2023. 12. 31. 현재 총 6개의 [팀버핏] 직영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3. 업종

영업표지	업종	
TEAMBUTFIT 팀버핏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팀버핏]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0	0	0	3	0	3	6	0	6
서울	0	0	0	3	0	3	5	0	5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1	0	1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년 간 [팀버핏] 가맹점 수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을 예정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팀버핏]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지난 3년간 대한민국에서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한 바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을 예정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팀버핏]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을 예정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팀버핏]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2023년 사업연도 동안 당사가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팀버핏]을 광고 및 판촉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약 5,000만 원입니다. 위 내역은 2023년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팀버핏]을 위해 사용된 광고·판촉 비용만을 추린 금액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IBK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IBK 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 지점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현대지식산업센터 2층, C동 220호	1588-2588

귀하는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금을 IBK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IBK 기업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 설치하여 로그인 하신 후, 기업서비스>가맹금예치제도>가맹점사업자에서 [주식회사 버핏서울]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귀하는 IBK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가맹금 예치방법은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IBK 기업은행과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팀버핏]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아래 4)항 참고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최초 가맹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7,200	-	-	-	
가입비	49,500	계약 체결시	영업개시 이전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5,500	계약 체결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법률자문비용	2,200	계약 체결시	영업개시 이전 계약 해지	영업 개시 등 가맹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

				된 실제비용	금을 공제
--	--	--	--	--------	-------

2) 보증금

(단위 : 천 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 보증금	5,000	계약체결시	- 가맹금 미지급 - 당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 포함) 미이행 - 가맹 계약 및 가맹사업 관련 법령 위반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당사에 대한 잔존 채무를 공제한 잔액 반환

귀하는 물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자 제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등 당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합계	62,200
가입비	49,500
교육비	5,500
법률자문비용	2,200
(현금)보증금	5,000

4) 가맹점사업자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다음 표의 ‘비고’에 따른 각 세부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기준 면적: ㎡)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TB 패키지	가맹본부	41,637	계약 체결시	장비 발주 후에는 반환 불가	(A)
오퍼레이션 패키지	가맹본부	62,593		시스템 배포 및 교육 이후에는 반환 불가	(B)
인테리어	협력업 체	3.3㎡당 560~1,500	계약 체결시 협의 결정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 불가	(C)
도면 설계비	가맹본부	15,246 ~ 22,506	계약 체결시 협의 결정		
공사감리비	가맹본부, 지정 공급업체	4,950	계약 체결시 협의 결정		
가구	가맹본부(필수품목) 협력업체, 지정 공급업체	3,957 ~ 4,948	계약 체결시 협의 결정		(D)
간판/사이니지	가맹본부	4,950 ~ 13,200	계약 체결시 협의 결정		(E)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가맹사업 준비 과정에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 TB패키지

TB패키지에는 1) 팀버핏 그룹운동 수업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소도구, 2) 코치 의류와 굿즈 최소 수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물품 발주 전 TB패키지 대금의 50%를 선납해야 하고 영업 개시 전날까지 대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장비 발주 후에는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은 불가합니다.

TB 패키지의 공급가격에는 보관비, 하역 및 이송비,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B패키지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항목	규격	수량(개)
소도구	Barbell (15kg)	1.8m	6
	Training Barbell (7.5kg)	1.8m	3
	Fast clip	-	20
	Bumper Plate	10LB	36
	Bumper Plate	15LB	12
	Bumper Plate	25LB	24
	Bumper Plate	5LB	12
	hex dumbbell	1KG	6
	hex dumbbell	3KG	12
	hex dumbbell	5KG	12
	hex dumbbell	7.5KG	12
	hex dumbbell	10KG	8
	hex dumbbell	12.5KG	8
	hex dumbbell	15KG	8
	hex dumbbell	17.5KG	4
	hex dumbbell	20KG	4
	hex dumbbell	22.5KG	4
	Competition kettlebell	4KG	8
	Competition kettlebell	8KG	12
	Competition kettlebell	12KG	12

	Competition kettlebell	16KG	8
	Competition kettlebell	20KG	8
	Flexible jump box	20*24*30 Inch	2
	Double salad band	Training Range : 5~50lb	9
	Double salad band	Training Range : 10~60lb	6
	Double salad band	Training Range : 25~80lb	4
	Double salad band	Training Range : 50~120lb	2
	Loop Band Set	Training Range : Medium	6
	TRX		2
	Step Box		2
	Core Bag	8KG	2
	Core Bag	12KG	2
	Core Bag	16KG	2
	Core Bag	20KG	2
	Balance Ball (BOSU)		4
	Penalty Box		2
	Pilates Ring		4
	Battle Rope	12m	2
	Medicine ball	4 LB	2
	Medicine ball	8LB	2
	Medicine ball	12 LB	2
	Medicine ball	16 LB	2
	Medicine ball	20 LB	2
	Jump rope		3
	Jump rope Rack		1
	AB Mat	30cm*37cm*7cm	4
	Yoga mat		24
	Yoga mat hook storage		2
	CrossFit station pole	(h) 2.2m	12
	CrossFit station pullup Bar	(w) 1m	6
	J-Cup		6
	multi- equipment rack	H : 1.5m / W : 2m / 4 Floor	2
	Moving Plate Rack		4
	Incline Bench		6

	Landmine		6
	Rowing Machine	PM5	6
	Bike Erg	PM5	3
	삼각콘(20개)		20
	스텝 레더(2개)		2
	ab 롤러		3
	슬라이딩 디스크		5
	폼롤러		20
	힙밴드		6
	스쿼트패드		3
	팀버핏 컵코스터		1
코치 의류	상의(반팔)		8
	상의(PK티)		8
	하의(반바지)		8
	하의(긴바지)		8
	바람막이		4
	양말(발목)		20
	양말(무릎)		20
	명찰		4
	완장		4
	팔찌		100
	수건		400

(B) 오퍼레이션 패키지

오퍼레이션 패키지는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고안한 부티크 피트니스 전용 운영 시스템 일체를 가리킵니다. [팀버핏] 수업 진행과 코칭을 위하여 필요한 커리큘럼 자동 송수신 시스템 및 전용PC, 미러링과 송수신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또한 지점 운영에 필수적인 매니지먼트 툴로서, 지점 경영과 매출 관리, 수업 개설과 예약 관리, 고객 관리와 커뮤니티 구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고객/강사 전용 APP을 포함합니다.

항목	규격	수량(개)
팀버핏 DID 가로형	65	2
팀버핏 DID 가로형	55	2
팀버핏 DID 세로형	55	4
바코드 스캐너		1
바코드 태블릿		1
부티크 운영 시스템		
부티크 강사 전용 App		
부티크 고객 전용 App		
DID System		
Connected Fitness System		

(C) 인테리어/도면 설계비/공사 감리비

상기 인테리어 비용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적 추정치이며 설비의 품질, 선택 사항, 추가공사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 화장실 공사, 샤워시설, 외장 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점포입지, 점포규모, 점포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기 비용으로 직접 시공을 하거나 업체를 선정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위한 도면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는 (i) 인테리어, 간판 및 사인물이 브랜드의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적합하게 완성되었는지 여부, (ii) 인테리어, 간판 및 사인물에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로고 등의 규격·배치 등(고객에게 팀버핏 점포라는 인식을 주는 일체의 요소 포함)을 검수합니다.

450만 원(부가세 별도)의 감리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가맹본부의 검수 통과는 인테리어, 간판 및 사인물에 하자가 없다는 승인이나 보장이 아니며, 하자 대한 책임은 직접 시공한 자가 부담합니다.

(D) 가구

위 항목에는 고객 유치 및 상담에 필요한 인포데스크, 상담데스크, 상담의자를 비롯하여 ‘커뮤니티 존’ 조성을 위한 커스터마이징된 의자와 테이블, 커뮤니티 보드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샤워 탈의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공용락커, 신발장, 수건 수거함, 샤워실 선반, 수건장 등을 추가 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적 인테리어 및 브랜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귀하가 기존에 보유한 물품이 있다 하더라도 가구를 새로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규격	수량	비고
인포데스크		1	필수
상담 데스크		1	필수
상담 의자		4	필수
관중석 의자(5구)		2	필수
우유 박스		16	필수
커뮤니티 보드		4	필수
락커	공용락커	60	선택
탈의실 신발장	남,여	2	선택
탈의실 파우더 데스크	남,여	2	선택
수건 수거함	남,여	2	선택
샤워실 선반	남,여	8	선택
땀수건 장		1	선택

(E) 간판/사이니지

귀하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규격에 맞는 간판 및 사이니지를 팀버핏 운동공간 외부 지정된 자리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항목	규격	수량	비고
내부 사이니지	팀버핏 빅로고	금속 제작 사인물	1	필수
	안내 사인물 등	아크릴 스카시 등	1	필수

	시설 안내판	시트지, 포맥스 등	1	필수
외부 사이니지	건물 외벽 간판	플렉스 간판	2	선택

만일 귀하가 건물 외벽 간판을 추가로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약 400~75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조건과 상황에 따라 부착 여부 및 가능성, 규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가맹본부와 귀하가 별도로 협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5)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는 지역내에 위치한, 당사의 승인을 받은 시설(이하 “ 영업장 ”)에서 가맹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을 운영할 입지를 선정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선정을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단, 가맹점사업자는 그룹운동 서비스 적합성, 사업을 위해 필요한 규모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 영업장의 물리적 규모, 지붕 및 벽이 훈련 장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 접근성, 충분한 주차장 확보 여부, 주변 분위기, 인접 지역 인구 밀도, 팀버핏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소음이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 당사가 정한 운영 시간 동안 영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경쟁업체 위치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영업장 입지 승인은 해당 입지가 가맹사업에 적합하다는 승인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사의 경영방침을 준수할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국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및 권한 하에 채용할 것

귀하의 [팀버핏]과 관련된 모든 고용 및 채용 결정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가맹본부는 귀하가 종업원을 채용하는 계약 형태 및 조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팀버핏]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은 입지나 공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는 최소한 이 정보공개서 IV. 1. 4) 항의 장비목록을 구매해야 합니다.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 9.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 원,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 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월 가맹 수수료	가맹본부	월 결제액의 10% 또는 250 중 큰 금액	다음 월 10 일	영업표지의 사용 대가로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운영하 는 각 가맹영업장 별로 납부해야 함
교육 훈련비	가맹본부	1,000~1,500	교육 실시 7 일 전	교육 실시 이후에 는 반환되지 않음	교육 필요시 인당 금액으 로 지급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 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 을 시 부담

영업표지변 경 등에 따른 간판비용	가맹본부	가변	간판변경 후 30 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합의 하여 결정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마케팅 계약에 따름)			
지역 광고비		행사별로 분담 (마케팅 계약에 따름)	발생시		
점포환경개 선비용	VII. 1. 참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귀하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
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합리적인 시간대라면 언제든지 귀하의 영업장에서 귀하의 회계장부 및 기록을 검토,
감사, 검사, 복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위하여 귀하는 가맹사업 관련 기록을 함부로 삭제
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정상 영업 시간 중에 귀하의 영업장에 출입하여 영업장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운영 매
뉴얼 및 가맹계약에 따른 귀하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가집니다(이하 “**현장 방문
감독**supervising”).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직원이 현장 방문 감독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는 사전에 귀하에게 방문점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 지급액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귀하는 미지급액 또는 과소계상액과 그 이자를 즉시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재가맹비 22,500,000원(부가세 별도) 및 최초 가맹금(할인 전 정상가)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가맹점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귀하도 이에 동의하면 귀하에게 점포 이전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등으로 인해 귀하가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지 어려울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귀하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 중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사 및 귀하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사의 경영 판단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합니다.

귀하는 영업표지가 변경된 이후부터는 기존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고, 기존 영업표지가 부착된 제품과 기타 가맹점의 설비 등은 당사의 요청에 따라 교체 · 교환 ·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전 영업표지의 철거 및 신규 영업표지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귀하와의 협의를 거쳐 가맹계약을 종료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어떤 사유로든 가맹계약이 만료, 종료,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귀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a) “팀버핏TEAMBUTFIT”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 (구 팀버핏 또는 전 팀버핏이라는 표현도 불가)
- (b) 간판, 사이니지를 포함하여 영업표지 및 핵심 브랜드 컬러가 포함된 모든 상징물, 설비의 철거 (이에 관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c) 전화번호 (114 등록 및 스마트 플레이스를 포함한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 삭제
- (d) 온 오프라인 상 팀버핏 홍보 활동 중단 및 소셜미디어 계정 삭제
- (e) 가맹사업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지식재산 정보 반환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 서류(회원정보, 운영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전자파일로 소유한 모든 관계 서류는 하드디스크 및 클라우드 상에서 원본 및 사본 전체를 그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③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와 협의를 한 후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고객들에게 일관된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고 신뢰를 얻기 위하여 당사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운영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가맹점사업자가 팀버핏 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등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인을 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사가 공급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하자, A/S 등의 사항은 전적으로 귀사의 부담입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위 표에 기재된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기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패키지] 당사는 TB패키지에 포함된 운동기구, 소도구 등에 [팀버핏] 브랜드를 상당한 비용을 들여 반영하였는바, 동일 규격의 시중 제품과 단가 비교가 어렵고,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책정한 공급 단가에는 당사의 마진이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TB패키지 관련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는다고 표기하였습니다.

[오퍼레이션 패키지] 오퍼레이션 패키지는 (i) 하드웨어 부분(모니터, 스캐너, 태블릿 등)과 (ii) 시스템 운영 부분(APP 및 기타 시스템 등)으로 구별됩니다. 하드웨어 부분의 공급 단가는 시장 가격을 고려한 후 당사의 마진을 최소화하여 책정하였고, APP 및 기타 시스템 운영 부분은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생산한 품목인바 오퍼레이션 패키지(DID 장비) 관련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는다고 표기하였습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팀버핏]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

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운영매뉴얼에 기재되어 있거나 당사로 부터 서면에 의해 명시적인 승인을 받은 상품·용역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장에서 ① 가맹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② 운영 매뉴얼에 따른 정규 그룹 수업이 아닌 다른 트레이닝 교습을 진행하거나 ③ 이를 위해 제3자(가맹점 사업자의 종업원 포함)에게 영업장을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④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팀버핏 그룹운동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⑤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가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장을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⑥ 영업 지역 외부에서 가맹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업 지역 외부에서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시장 및 고객 니즈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경영 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귀하가 운영매뉴얼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1회 위반 시 : 구두경고
- 2회 위반 시 : 서면으로 시정 요청
- 3회 이상 위반 시 : 계약 해지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시장, 소비자의 동향 및 다른 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이
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
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품·용역별 권장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팀버핏 1주일 체험권	19,900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2023.12 기준
팀버핏 30일 무제한권	330,000		
팀버핏 90일 무제한권	769,000		
팀버핏 180일 무제한권	1,440,000		
800크레딧	279,000		
2400크레딧	720,000		
모닝패스 30일	230,000		
모닝패스 90일	570,000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
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대상 고객, 지역 경계, 인구 구역, 판매 제품 유형, 사업 방식 및 기법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팀버핏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룹 웨이트 트레이닝, 그룹 씨킷 트레이닝 서비스	팀버핏 TEAMBUTFIT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특수상권의 경우 해당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1. 역세권/오피스/쇼핑/대학 상권의 경우 반경 100m로 한정 2. 5층 이상의 건물로서, 층당 400-500평 이상의 면적을 보유하거나 상주 인원 1인당 1.5-1.8평을 보유한 오피스 빌딩의 경우(소위 ‘슈퍼빌딩’) 건물 1개를 하나의 상권으로 분리 3. 주택가 상권의 경우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200m로 함(역세권을 포함한 주택가 상권의 경우 역세권 기준을 우선으로 함) 4. 해당 상권이 산 또는 도로, 철길 등 지형지물에 의해 고립되어 현격히 상권이 분리되는 경우 고립상권만 부여 5.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제외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위 1-4항을 원칙으로 하되, 500m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계약체결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권이라 함은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합니다.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은 제외되며 상권에 따라 상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신규점포입점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해야 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조치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조치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팀버핏]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치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팀버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 제외)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대한민국 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팀버핏의 가맹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서상 따로 정한 계약 발효일로부터 [5년]이며, 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영업관련 활동을 계약갱신 여부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① 가맹계약상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1.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2.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당사가 귀하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관련 계약조문: 제43조(계약의 갱신과 거절) 제1항

당사는 계약 기간 갱신 신청을 거절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가 포함된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물품 등의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누적하여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당사와 약정한 각종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⑥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련 계약조문: 제34조(물품 등 공급의 중단) 제1항, 제44조(계약의 해지)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즉시 해지되오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관련 계약조문: 제44조(계약의 해지) 제2항

가맹계약 종료 시 가맹사업의 영업권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 기간 중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하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 가맹점사업자(양도인)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상태가 아니거나 위반행위에 대해 가맹본부가 만족할 만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을 것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에게 가맹계약서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갱신 거절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양수인에게 가맹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양수인은 가맹계약상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기초 교육을 받고 IV. 1. 6)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것(교육비는 영업양수하는 신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등 약 30일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의 확정’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등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양도의 확정’ 전까지 양도인은 당사에 대한 모든 채무(물품대금 등의 미납금 포함) 및 당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당사에 모두 지급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양도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 등(담보설정, 동업, 전대차, 점포이전의 경우 또한 포함합니다)을 할 경우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가맹점운영권을 상속하기 위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 동업자, 대리인, 수임인, 수탁자 등은 교육비(500만원, VAT별도)를 당사에 지급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비고
상속	당사 승인시	모든 권리의무	교육비 지급 및 교육 이수
대리행사	당사 승인시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업무위탁	당사 승인시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 3년간 다음 지역 내에서 [팀버핏]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가맹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기간	제한 지역	제한 행위
가맹계약기간 중	기간 및 지역의 제한 없음	○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팀버핏]을 영위하는 행위 ○[팀버핏]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계약 종료 후 3년간	기존 영업 지역 내	○[팀버핏]과 동일한·업종의 사업을 진행하는 행위 ○가맹계약 종료 현재 가맹점사업자의 회원이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회원이었던 자 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자에게 상품 판매 및 계약을 권유하거나 가맹본부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단골 고객을 빼앗는 행위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팀버핏]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6:00-23:00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귀하가 연속하여 2 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직접 근무	해당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점검 · 감독

당사는 IV. 2. 3) 에 따라 영업장을 관리 감독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팀버핏]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귀하 등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당사의 브랜드 통일성 검토 → 승인여부 통지
	상품, 브랜드 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부담비율 안내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 → 가맹점사업자 50%동의 →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시 →
판촉행사	전국 및 지역별 판촉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시 → 동意的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 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 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 다.
	개별 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 당사 의 브랜드 통일성 검토 → 승인여부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자기의 비용으로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
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운영매뉴얼상 브랜딩 가이드를
따라야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
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
보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 기간은 물
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
을 인쇄 또는 복사, 누설할 수 없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종업원은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한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위약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당사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귀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해당없음
가맹 희망자 문의	- 희망자의 최초 문의 접수	D-90~D-180	해당없음
가맹 신청서 및 기밀유지동의서 작성	- 가맹 희망자의 기밀 유지 동의 - 가맹 희망자가 가맹 신청서 작성 -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 지역 배당	D-80~D-100	해당없음
사업설명/상담	-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 희망자와 상담	D-80~D-100	해당없음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 협상 및 체결	D-30~D-85	해당없음
가맹금 예치	- IBK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20~D-80	II. 11. 참조
실내외 공사 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공사 실시	D-15~D-60	해당없음
교육훈련 실시	- 영업장 운영 관련 교육 훈련	D-7~D-30	해당없음
점포 개설	- 가맹영업장 개업	D-day	해당없음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 거래사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최소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되며, 정보공개서 제공 7일 후에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협의절차	- 가맹본부의 권유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점포환경 개선 시행 - 가맹점사업자의 신청 → 가맹본부의 검토 및 승인 → 점포환경 개선 시행

2. 판매촉진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자문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금융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당사는 경영상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팀버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팀버핏]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 시간	비용(천 원)
신규 교육	14일	5,000 (최초가맹금에 포함)
신규 코치 교육	5일	600~2,000 (단, 가맹본부의 추천을 받아 코치를 채용한 경우 교육비 면제)
상시 교육	개별 협의	컨설팅 내용 및 투입 시간에 따라 가변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부대비용(교통, 숙박, 식사, 급여 등)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심화(정기) 교육	5일	없음

3. 교육 · 훈련의 주체

신규 교육, 상시 교육, 심화(정기)교육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

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규 코치 교육은 귀하가 신규로 채용한 코치(일용직,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정규직, 계약직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함)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 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직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신규로 채용한 코치가 신규 코치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수업 활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 미이수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등 귀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팀버핏 역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G층 8호
2	서울	팀버핏 도곡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1 아카데미스위트지하2층
3	서울	팀버핏 신도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 28층
4	서울	팀버핏 논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41 펜트힐루논현 지하1층
5	경기	팀버핏 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36 B3007
6	서울	팀버핏 강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 12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1개월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 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 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였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원, VAT 제외)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18,440,611원	당사의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 상의 매 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월평균매출액 을 근거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불일치 사항 신고는 저희 담당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501-3624, teambutfit@butfitseoul.com)

◇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정보(02-2033-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go.kr)로 문의하십시오. 저희는 개별 정보공개서에 대한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은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franchise.ftc.go.kr>).

[별첨] 2023, 2022, 2021 표준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